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57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김기웅 · 임종득 · 김소희
서명옥 · 이만희 · 백종현
최형두 · 안철수 · 박성훈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능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는 표시·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표현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광고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물분해성”, “친환경” 등 화장품의 환경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경우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해성 등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표현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의 개발·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이 그 생산·유통·소비·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국제표준 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의 개발·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권장 표시 사항 및 표준 문안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u>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 ----- ----- -----, 이 경우 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의 물분해성 등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화장품 및 그 용기·포장이 그 생산·유통·소비·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u><후단 신설></u>	

② ~ ⑦ (생략)	<u>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가 정한 기준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u> ② ~ ⑦ (현행과 같음)
-------------------	---